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

2017.10.19. 시행

1. 안전보건조정자 < 신 설 >

① 개요

가.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분리발주 전기공사, 분리도급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.

나.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② 안전보건조정자 선임

가. 발주청 선임한 공사감독자

나.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(건축법, 건진법, 주택법, 전력기술관리법, 정보통신사업법)

다.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
라. 산업안전지도사

마. 건설안전기술사

바.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사.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③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

가.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

나.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

다.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·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

라.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

마.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

2.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< 교재 p1-7 관련 >

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**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[하수급인(下受給人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**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
3. 도급사업 시의 안전·보건조치 < 교재 p1-14 관련 >

<< 기존 내용 >>

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(製劑)를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< 개정 내용 >>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

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

----- .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1.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(製劑)를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·분해·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

<신 설>2.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
<신 설>3.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